

문서번호	인사처-284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6.01.13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

	인사처장	경영전략본부장	이사장직무대행	
협 조	기획조정실장			

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(안)

2016.

계약직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(안)

〈 관련근거 〉

- 최저임금법 제 10조 1항
-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 2조
- '16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(서울특별시시장 방침 제247호. '15.9.16)

□ 기본방향

-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법적 요구사항 충족
- 정규직과 동종·유사업무 수행 계약직근로자의 차별처우 개선
- 2016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에 따른 생활임금제 시행

□ 처우개선(안)

○ 준공무직

- 설정방향

- 서울형 생활임금(7,145원 **‘지급+급식비+교통비’**) 적용
- 처우개선비 등을 통해 정규직(공무직) 수준의 임금 설정

- 급여표

구 분	월 급여					명 절 휴가비
	기본급	수당			계	
		급식비	교통비	처 우 개선비		
청소·주차· 기타	1,385	100	100	176	1,761	설/추석 각 200
경비	1,730	100	100	25	1,955	설/추석 각 200

※ 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 기준 지급. 신규입사자, 퇴직자의 경우 발령일 기준 월할계산(15일 이상 근무자는 전액 지급 및 15일 미만 근무자는 전액 미지급)

- 성과급 : 공무직과 동일기준 적용 ※ (보수월액×12)의 1% ~ 5%

* 보수월액 : 기본급, 급식비, 명절휴가비

○ 계약직원

- 설정방향

- 서울형 생활임금(7,145원 **‘지급+급식비+교통비’**) 적용
- 처우개선비 등을 통해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처우 시정

- 임금수준

- ① 전문계약 : 별도방침에 의함
- ② 일반계약 : 별도방침에 의함. 단, 정규직 대체근로자는 예산범위 내 정규직 임금수준 지급
- ③ 일용계약 : 서울형 생활임금 + 처우개선비 등

시 급	공통수당(월)	비 고
6,190원 이상	급식비 100천원, 교통비 100천원, 처우개선비 176천원	

※ 수당은 지급일 현재 재직자 기준 지급. 신규입사자, 퇴직자의 경우 발령일 기준 월할계산(15일 이상 근무자는 전액 지급 및 15일 미만 근무자는 전액 미지급)

- ④ 단시간계약 : 일용계약 준용하되 수당은 근무시간 비례 지급

【 유의사항 】

- 해당부서에서는 부서별 예산, 직무성격, 근무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 및 시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제 2조 및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제 5조에 따른 차별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

□ 행정사항

- 준공무직 근로계약 체결 : 해당부서

붙임 : (준공무직) 근로계약서 1부. 끝.